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최호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793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최호정, 강석주,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김혜지,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서상열, 송경택, 유만희,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은림,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최민규,
허 훈, 홍국표 의원(29명)

1. 주문

- 서울특별시의회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대형 굴착공사장 주변 지반침하 사고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고 지하공간 안전관리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지하공간 안전대책·관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함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최근 대형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연이어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하공간 안전관리에 대한 강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방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명시되어 있으나, 지하공간의 안전대책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고 있음. 대규모 개발 사업 시 지반 침하와 같은 안전 문제에 선제적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지질 및 지반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함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하공간의 안전에 대한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지질 및 지반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지상뿐만 아니라 지하공간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대규모 개발 사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침하 등 위험 요소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임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지하공간 안전대책·관리가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이송처

- 대한민국 국회, 국토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최근 서울시를 중심으로 대형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연이어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며, 지하공간 안전에 대한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자 지하공간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혁신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사후 조치가 아닌 사전적 계획과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토의 이용·개발을 총괄하는 국토계획법에서는 지하공간 안전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계획 수립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시계획 수립 시 지하안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국토계획법의 개정을 통해 도시·군기본계획에 지하공간 안전을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시의 고도화와 공간 부족 문제로 인해 지하공간의 활용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하공간 내 기반시설, 교통시설, 상업시설 등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에서는 지하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이 포함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1조와 제3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 등을 기본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도시·군기본계획에서는 지하공간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시의 최근 지반침하 사례는 이러한 법적 공백이 도시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향후 도시계획 수립 시 지하공간 안전 항목을 의무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합니다.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지하공간의 이용 현황, 지반 안정성 확보방안 등 지하공간 안전 계획을 법정 요소로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거나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하공간 안전이 국토계획법의 법정 계획 요소로 포함되면, 초기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하공간의 활용 및 안전 대책 수립이 가능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선제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기본계획의 실효성과 실행력을 높이며, 지하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통해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기반을 토대로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가능해지고, 지하공간 개발에 대한 국민적 신뢰 또한 제고될 것입니다.

현대 도시의 성장 양상은 지상과 지하를 아우르는 통합적 계획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 이상 지하공간의 안전을 도시계획의 부수적 요소로만 다룰 수는 없습니다. 도시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에 국토계획법 개정을 통해 도시·군기본계획에 지하공간 안전 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5. 5.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